

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	2002년도시정 업무계획청취 결의안	□ 제안이유 2002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민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발의 함 □ 주요골자 ○ 기 간 : 2001. 2. 23 ~ 2. 27 (4일간) - 일요일은 제외 ○ 장 소 : 각 상임위원회실 ○ 인사(간부소개) 및 총괄설명 • 본 청 : 국 장 • 사 업 소 : 사업소장(4급) • 구 청 : 구 청 장 ○ 업무계획 세부설명 • 본 청 : 담당관, 과장 • 구 청 : 과장 • 사업소 : 사업소장 (과장)	-	본 회의

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2	성남시명예시민 증수여조례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를 재외동포 및 다른 시·군·구 출신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종전에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만 수여토록 하는 명예시민증서를 재외동포 및 다른 시·군·구 출신의 주민으로 확대함 (안 제1조) ·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, 문화·예술·체육·과학·기술·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,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,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(안 제2조) · 명예시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·군·구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수여함 (안 제3조) ·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(안 제5조) ·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짐 (안 제6조제1항) ·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(안 제7조제1항)	총 무 과	행정경제

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3	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및 국민기초 생활 보장·저소득층 지원강화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· 사회복지직 신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□ 주요골자 ·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(안 제2조) ○ 총 정 원 : 2,165명 → 2,183명(증 18명) ○ 집행기관 : 2,138명 → 2,156명(증 18명) ○ 의회사무국 : 27명(변동없음)	총 무 과	행정경제
4	성남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목적규정의 자구를 정리하여 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, 등록문화재에 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 ·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12조제1항)	세 정 과	행정경제

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5	성남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・ 각종공사, 용역, 물품구매등 입찰제도가 2001. 10. 15일부터 인터넷 전자입찰제로 변경시행되면서 기존 수기접수시 소요된 인건비, 부대비용 등 원가가중요인이 없어짐으로써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명분이 상실되어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 ☐ 주요골자 ・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폐지함(안 별표1)	회 계 과	행정경제
6	성남시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 안	☐ 제안이유 ・ 각 기관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간소화 하고,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물품의 장부상취득가액을 인상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함 ☐ 주요골자 ・ 각 기관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간소화 함(안 제16조) ・ 종전에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 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에 한하여 감정토록 함(안 제17조)	회 계 과	행정경제
7	성남시여성회관 운 영 조 례 중 개 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・ 중앙문화정보센터내 여성문화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・ 체육시설중 에어로빅장, 헬스장의 개별 사용료와 2개 이상의 시설이용시 월사용료의 범위를 정 함(안 별표2)	중앙문화 정보센터	사회복지

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위 회
8	성남시공동주택 등의 관리 분쟁 조정 위원 회 조 례안	□ 제안이유 -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자문 과 조정을 관장할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□ 주요골자 -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 회의간에 발생한 공동주택 등의 하자에 관한 분쟁,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,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함 (안 제2조) - 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(안 제3조) - 조정은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절차가 개시됨 (안 제10조) - 처리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(15일내)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, 당사자 등에게는 그 사유 를 통보하도록 함. (안 제11조) -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작성하도록 함. (안 제15조) -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가 이를 부담하도록 함. (안 제20조)	주 택 과	도시건설

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																	
9	성남시도시개발 조례안	□ 제안이유 -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-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공청회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함 (안 제4조) -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 (안 제5조) -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장이 시행시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함 (안 제6조) - 과소토지의 기준을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(안 제7조) -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용 (안 제8조) - 융자조건을 정함 (안 제13조) -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 설치운영(안 제14조)	도시개발과	도시건설																	
10	성남도시계획시 설(공원)변경에 관한의견청취안	□ 제안이유 정부에서는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다수의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나 시가지 내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 공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부지를 일부 해제하여 학교부지를 확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함. □ 주요골자 <table border="1"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시설 의 세분</th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3">면적(m²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기 정</th> <th>변경</th> <th>변경 후</th> </tr> <tr> <td>변경</td> <td>은행 근린 공원</td> <td>은행동 산24-7 번지일원</td> <td>183,651.3</td> <td>감) 17,855</td> <td>165,796.4</td> <td>학교 시설</td> </tr> </table>	구 분	시설 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비고	기 정	변경	변경 후	변경	은행 근린 공원	은행동 산24-7 번지일원	183,651.3	감) 17,855	165,796.4	학교 시설	도 시 과	도시건설
구 분	시설 의 세분	위 치				면적(m ²)				비고											
			기 정	변경	변경 후																
변경	은행 근린 공원	은행동 산24-7 번지일원	183,651.3	감) 17,855	165,796.4	학교 시설															

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	성남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에 관한의견청취안	□ 제안이유 ·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능률 향상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및 강의동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 중 잔여부지는 경사가 급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<table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시설 의 세분</th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3">면적(m²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기 정</th> <th>변경</th> <th>변경후</th> </tr> <tr> <td>변경</td> <td>동서울 대학</td> <td>수정구 북정동 산42번지 일원</td> <td>122,268</td> <td>증) 14,343</td> <td>136,357</td> <td>구적오차 정정포함 감) 254m²</td> </tr> </table> ○ 세부시설결정조서 <table> <tr> <th>세부 시설명</th> <th>위 치</th> <th>면적(m²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</td> <td>136,357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 사</td> <td>북정동 산42번지일원</td> <td>18,34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주차장</td> <td>북정동 682번지일원</td> <td>41,32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운동장</td> <td>북정동 423번지일원</td> <td>47,87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도 로</td> <td>북정동 산42번지일원</td> <td>5,556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녹 지</td> <td>북정동 산42번지일원</td> <td>21,833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광 장</td> <td>북정동 423번지일원</td> <td>1,430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구분	시설 의 세분	위 치	면적(m²)			비고	기 정	변경	변경후	변경	동서울 대학	수정구 북정동 산42번지 일원	122,268	증) 14,343	136,357	구적오차 정정포함 감) 254m²	세부 시설명	위 치	면적(m²)	비고	합 계		136,357		교 사	북정동 산42번지일원	18,340		주차장	북정동 682번지일원	41,324		운동장	북정동 423번지일원	47,874		도 로	북정동 산42번지일원	5,556		녹 지	북정동 산42번지일원	21,833		광 장	북정동 423번지일원	1,430		도 시 과	도시건설
구분	시설 의 세분	위 치				면적(m²)	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기 정	변경	변경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변경	동서울 대학	수정구 북정동 산42번지 일원	122,268	증) 14,343	136,357	구적오차 정정포함 감) 254m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부 시설명	위 치	면적(m²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136,35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 사	북정동 산42번지일원	18,3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차장	북정동 682번지일원	41,3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동장	북정동 423번지일원	47,87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 로	북정동 산42번지일원	5,55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녹 지	북정동 산42번지일원	21,83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광 장	북정동 423번지일원	1,4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2	용산미군기지 성남시이전 반대결의안	☐ 주문 우리시 의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성남시로 이전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될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함. ☐ 제안이유 ○ 우리 성남지역은 70년대부터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공도시가 형성되어 수많은 도시 문제를 안고있을 뿐만 아니라, 주요 군부대가 여러곳에 주둔함으로써 각종 규제 및 건축물 제한 등으로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우리 성남 시민들은 국가의 안보를 중요시하여 지금까지 참으면서 생활하여 오던 중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수정. 중원구 재개발과 판교개발로 시민들은 21세기 성남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, ○ 지난 1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서울 용산에 소재한 미군기지가 성남으로 이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시민들이 접한 후 당혹감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바, 이번 사태에 대해 관계당국에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자 함	총 무 과	행정경제